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건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895

발의연월일: 2025. 2. 4.

발 의 자:김 건·이헌승·안철수

주진우 · 최수진 · 서일준

최형두 · 김태호 · 최보윤

정동만 • 유용원 • 신동욱

박충권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·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, 이 중 반도체 기술 등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·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는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, 이에 대한 연구·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포함하고,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·인력개발의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30(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40)에서 100분의 40(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50)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"바이오의약품"을 "바이오의약품", 인공지능, 클라우드컴퓨팅"으로 하고, 같은 호 가목1) 중 "100분의 40"을 "100분의 50"으로 하며, 같은 목 2) 중 "100분의 30"을 "100분의 40"으로, "100분의 35"를 "100분의 45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아 정 제10조(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제10조(연구 ·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) ① 내국인의 연구개 세액공제) ① -----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(이하 "연구 · 인력개발비"라 한 다)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· 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 며.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 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. 1. (생략) 1. (현행과 같음) 2. 연구·인력개발비 중 반도 체, 이차전지, 백신, 디스플레 이, 수소, 미래형 이동수단, 바이오의약품 및 그 밖에 대 이오의약품, 인공지능, 클라우 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 드컴퓨팅-----

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(이하 "국가전략기술"이라 한다)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(이하 이 조에서 "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"라 한다)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계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계산한 금액

가.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

- 1) 중소기업에 해당하는경우: 100분의 40
- 2) 그 밖의 경우: 100분의 30(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

 가
가
가
가
가
가
가
가
가
가

연도까지 <u>100분의 35</u>)

나. (생 략)

3. (생략)

② ~ ⑥ (생 략)

-----<u>100분의 45</u>-

나. (현행과 같음)

3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